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지침	문서번호	HSNC-ID09
		개정번호	8

Rev No.	제.개정일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1.08.31	최초 제정	천광택	양승호	이청남
1	2003.07.01	등록절차 간소화 및 실적평가 강화	천광택	장의용	이청남
2	2004.09.01	실적평가항목 및 평가대상 변경	천광택	장의용	이청남
3	2007.11.01	협력업체등록평가 및 실적평가 기준 변경	천광택	김기한	김관수
4	2010.03.08	용역(개발, 운영), 유지보수계약 평가항목추가	신동일	김기한	진화근
5	2010.12.21	협력업체 등록평가 및 실적평가 기준 변경	권오익	김기한	진화근
6	2012.02.27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소싱설명회 운영 추가	권오익	최용남	진화근
7	2012.12.28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협력업체 등급별 관리 방안 변경	남기형	최창원	진화근
8	2016.11.07	협력업체 등급별 관리 방안 /등록 절차 변경	박관순	박찬홍	김용욱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팀	구매그룹	경영지원실	대표이사
성명	박 관 순	박 찬 홍	김 용 욱
서명			

목 차

1. 총 칙
2. 임시거래업체 등록 및 운영
3. 협력업체 등록 및 실적평가
4. 기록 및 보관
5. 첨부 및 서식

1. 총 칙

1.1 목 적

본 지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평가관리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협력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등록과 당사에 상품, 자재,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평가관리에 적용한다.(단, 회사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비품 등의 공급업체에는 적용치 않는다.)

1.3 책임과 권한

평가주관부서장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사후 평가관리 한다.

1.4 용어의 정의

- 1) 신규업체란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서 당사와 거래실적은 없으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2) 임시거래업체란 특정PJT에 대하여 고객사가 당사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업체를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거래가 필요 할 때 등록한 업체를 의미한다.
- 3) 거래일시정지란 3년 이상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 입찰에 탈락함으로써 당사와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함을 의미한다.
- 4) 거래금지업체란 정기실적평가 결과 금지등급 또는 수시평가 후 구매팀장 승인을 득 하여 당사와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업체를 의미한다.
- 5) 협력업체란 당사에 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구 분		정 의
상품/자재 협력업체	Major Commodity Supplier	주요 장비 및 자재를 제공하는 Global Maker의 Partner社
	Technical Commodity Supplier	자재 및 상품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품목으로 시스템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의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General Commodity Supplier	단순 자재 및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Expendable Commodity Supplier	사무용품/소모성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공사협력업체	Outsourcing Supplier	정보통신, 전기통신 등 공사업무를 제공하는 업체
용역협력업체	Service Supplier	SI개발, SM운영을 위한 인력투입을 제공하는 업체

유지보수 협력업체	Maintenance Supplier	H/W 또는 S/W에 대한 정비 및 장애처리를 위하여, 부품 또는 인력투입을 제공하는 업체
--------------	----------------------	---

- 6) 공사협력업체는 시공능력이 15억원을 초과하는 1군공사업체와 시공능력이 15억원을 미달하는 2군 공사업체로 구분하고, 용역협력업체는 운영성격에 따라, SI개발 용역업체와 SM운영 용역업체로 구분한다.
- 7) 인터넷구매시스템(IPS)란 전자거래수단을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당사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 , 임시거래업체 등록 및 운영

2.1 임시거래업체 등록

- 1) 임시거래업체 등록은 협력업체등록절차(3-5-3)조항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2) 임시거래업체 등록은 신규업체로부터 협력업체등록신청서(HSNC-ID09-F01)를 제출 받은 후 거래업체 구분란에 임시거래업체로 등록하고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 3) 고객사의 지정에 의하여 거래가 불가피한 임시거래업체는 첨부임시거래업체등록평가서(HSNC-ID09-F08)를 작성하여 구매팀장의 승인 후 등록한다.

2.2 임시거래업체의 운영

- 1) 특정PJT에 대하여 고객이 신규업체를 공급업체로 지정한 경우, 임시거래업체로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다
- 2) 긴급 구매발생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일정상 협력업체등록평가진행이 불가 할 경우 임시거래업체로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다
- 3) 임시거래업체로 등록되어 거래 된 해당업체는 협력업체등록평가를 시행하여 적격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
- 4) 임시거래업체 중 협력업체등록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업체로 판정되거나 임시거래업체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거래일시정지(사전등록업체 수준)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3 거래일시정지업체의 해제

- 1) 3년 이상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 입찰에 탈락함으로써 당사와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의 일상적인 거래를 중지하고 사전등록업체 수준으로 전환한다. 이 후 반드시 재 등록평가 과정을 거쳐 임시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로 전환하여야만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2.4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소싱설명회 운영

- 1) 신규협력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POOL 확보를 위하여,연간 1회 이상 소싱설명회(상담회)를 운영한다(단, 협회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협력사 상담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협회가 운영하는 절차에 따른다)

- (1) 소싱설명회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IPS시스템을 통해 행사내용 및 기간을 명기하고, 접수기간, 등록절차 또는 등록취소 기준을 공개한다(공정위 가이드라인 준수)
- (2) 기 등록업체라도 오랫동안 거래가 중지된 협력업체 또한 본 행사기간을 통해 솔루션 및 업체일반현황을 재검토하여 거래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소싱설명회를 통해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평가 외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 경쟁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 3) 이 후 협력업체 관리 절차는 3-5(협력업체운영) 및 3-6(협력업체 정기실적평가)의 내용을 따른다

3. 협력업체 등록 및 실적평가

3.1 협력업체 선정 방향

- 1) 품질, 기술수준, 가격, 서비스가 우수하고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한다.
- 2) 신규업체는 협력업체 등록평가를 실시하여, 등록업체로 승인된 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3.2 평가주관부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주관부서는 상품/자재/용역/유지보수/공사를 직접 구매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팀이 업무를 주관한다

3.3 평가자 선정

- 1) 평가자는 관련업무에 재직한 직원으로 선정한다
- 2) 평가주관 부서장은 필요시 관련부서에 평가자 선임을 요청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4 협력업체 등록기간

- 1) 협력업체의 등록 기간은 연간 1회(정기실적평가기간과 동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구매 건 별 협력업체(임시등록업체)의 등록을 시행 할 수 있다

3.5 협력업체 등록평가

1) 등록검토

- (1) 구매관련 팀은 신규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에는 최초 등록 추천인 및 추천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체 확정 품의서에 기재된 협력업체는 정규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임시거래업체로 분류되며 협력업체 추천서 제출을 면제한다
- (2) 신규업체는 당사의 인터넷구매시스템(IPS)에 접속하여 협력업체등록신청서(HSNC-ID09-F01)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등록심사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협력업체등록 공통 제출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2부
-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원본 1부
- 마. 거래통장(우리은행) 사본 1부
- 바. 재무제표 1부
- 사. 결제계좌신고서 원본 1부
- 아. 기업 신용평가서 사본 1부
- 자. 회사소개서 1부
- 차. 행정처분확인서(공사업법 외)
- ② 협력업체등록 추가 제출서류 (공사 협력업체의 경우)
 - 가. 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나. 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다. 공사실적 확인서(공사협회에서 발급한 2년간 실적)
 - 라. 기술자 보유 확인서(공사업등록수첩 사본 또는 협회 발급서류)
 - 마.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공사업등록수첩 사본 또는 협회 발급 서류)
 - 바. 국제 품질인증제도(ISO 인증서 등) →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첨
 - 사. 설비/장비 보유현황
- ③ 협력업체등록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2부
 - 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원본 1부
 - 마. 거래통장(우리은행) 사본 1부
 - 바. 재무제표 1부
 - 사. 결제계좌신고서 원본 1부
 - 아. 기업 신용평가서 사본 1부
 - 자. 회사소개서 1부
- ④ 자재/상품업체
 - 가. Partnership 계약 또는 Dealership 계약서
 - 나. 기술인력보유현황서
- ⑤ 용역/유지보수 업체
 - 가. 용역업체: Cmmi, ISO등 서비스프로세스 품질인증 서류
 - 나. 유지보수업체: HW, SW의 해당 제조사 Maintenance Partnership계약 또는 인증서
- ⑥ 기타
 - 가. 제품 CATALOGUE 또는 설명서, Sample등의 참고 서류

2) 평가방법

- (1) 구매담당자는 첨부된 협력업체등록평가서(HSNC-ID09-F03~F09)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

평가를 실시한 후 등록적합 점수(75점) 이상인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 한다. 다만, 등록적합점수가 미달 된 업체라도 당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관련팀으로부터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 구매팀장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로 등록 할 수 있다

- ① 재무평가: 해당회사의 재무현황에 대한 평가
 - ② 경쟁력평가: 타 경쟁회사 대비 품질/영업, 판매 등 해당사 경쟁력 평가
 - ③ 품질능력평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기술보유 현황 또는 수행능력평가
- (2) 긴급구매발생으로 구매발주 전에 신규업체에 대한 협력업체등록평가가 불가할 경우 임시거래업체로 등록/거래한 후 협력업체등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등록절차

협력업체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1)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3)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4)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등록평가 결과 적합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서류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협력업체등록을 구매팀장에게 상신한다
- (5) 협력업체로 승인된 신규업체는 IPS의 거래업체 구분란에 협력업체로 등재한다. 임시거래업체로 승인된 신규업체는 임시거래업체로 등재한다
- (6) 정식 외주공사협력업체 등록절차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1,3사분기 중 구매담당자는 해당팀 및 구매팀의 추천을 받아 첨부 협력업체 등록평가서(HSNC-ID09-F03~F09)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평가(일반평가(구매팀), 기술평가(해당팀))를 실시한 후 등록적합 점수(75점) 이상인 업체를 정식 외주공사협력업체로 등록 할 수 있다
- (7) 기존 외주공사협력업체 재평가 및 등록절차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최근 3년간 주요거래 공정의 공사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신규 등록 가능 업체 중, 해당팀장 및 구매팀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분기중에 전년도 공사수행 평가의 평균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정식 공사 협력업체 등록자격을 부여하며 평가 탈락업체는 임시거래업체 자격을 부여한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3분기중에 정식 외주공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재실시하여 B등급 이하의 업체는 임시업체로 전환하며, 필요시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의 업체도 75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임시거래업체로 전환된다 (단, 위 평가작업은 정기실적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8)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9)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

다.

4) 등록 취소

구매부서는 협력업체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1) 협력업체가 당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위반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 또는 부도, 파산, 휴업등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2) 협력업체실적평가 결과 최저등급(금지등급)으로 판정되었거나, 실적평가 미달항목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2년 이상 연속 경고등급)
- (3) 당사에 구매관련자료 또는 견적관련자료를 고의로 허위 작성하거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업체간의 담합 또는 거래관련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 (4)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법행위 또는 금품제공 등 부적절한 거래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 (5)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등록취소절차

- (1)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팀장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 (2) 협력업체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해당사 및 관련팀에 통지하여 거래금지토록 조치한다
- (3) 협력업체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거래금지업체로 전산 입력하여 별도 관리한다
- (4) 거래금지업체의 재 거래 발생 시, 반드시 협력업체등록평가를 재 실시하고, 구매팀장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로 등록 할 수 있다.(거래금지해제 시 명확한 사유 필요)
- (5)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과실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협력업체 운영

- (1) 자재/상품협력업체에 견적의뢰를 요청하는 우선수위는 제조사, 총판 또는 독점공급사, Reseller, 일반판매업체의 순서로 견적의뢰 한다
- (2) 용역/유지보수 협력업체의 경우, 연간계약을 연장 시에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 및 기존 수행업체의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수의협상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 (3) 공사 협력업체의 견적의뢰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협력 P00L업체 및 정식 공사 협력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거래 공정의 공사 입찰 시 정식 외주 협력업체로 등록 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4) 주요거래 공정이 아닌 공정의 공사 입찰시는 상기의 제약없이 당사에 등록 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2) 복수협력업체 유지 원칙

- (1) 구매담당자는 품목(공종별)당 최소 2개 이상의 복수 협력업체를 등록해야 하고, 협력회사간 상호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단, 구매관리규정(PD-07 Rev.9) 4-7의 견적의뢰 및 접수 절차에 의거,

복수협력업체 등록 및 복수입찰을 생략할 수 있다)

- (2)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실적평가 결과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거래미흡업체(경고등급)에게 미흡사유를 통지하여 적격업체로 향상시키거나, 이의 개선이 불가할 경우는 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2년 연속 부적격)

3) 협력업체 현황관리

- (1)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의 관련 data를 최신으로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공사협력업체는 협력업체별 공사실적 및 도급한도액, 기술인력현황 등을 별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협력업체 정기실적 평가

협력업체의 정기실적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구매 건 별 협력업체의 실적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1) 평가계획수립

평가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실적 평가계획(대상업체, 기준일, 평가자 선정 등)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한다

2) 평가대상

(1) 협력업체실적 평가대상은 아래와 같다

협 력 업 체		년 간 거래금액	년 간 거래건수
자재/상품 협력업체	Major Commodity Supplier	1억원 이상 업체	3회 이상 업체
	Technical Commodity supplier, General Commodity Supplier		
	Expendable Commodity Supplier	2천만원 이상 업체	10회 이상 업체
공사 협력업체	Outsourcing Supplier	5천만원 이상 업체	2회 이상 업체
용역 협력업체	Service Supplier	5천만원 이상 업체	1회 이상 업체
유지보수 협력업체	Maintenance Supplier	5천만원 이상 업체	1회 이상 업체

(2) 협력업체 실적평가 대상의 추가: 주관부서장은 필요 시 협력업체평가 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정기실적평가 외에 개별업체별로 추가 실적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제외 및 관리

- ① 당해년도 협력업체 평가대상에서 제외 된 업체는 평가등급 “R(유보)” 을 적용한다. 단, 거래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 협력업체는 별도평가를 시행하여 사후관리 할 수 있다
- ② 협력평가대상 업체 중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생산공장 등을 보유하고 국제적 규모의 생산,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과 해외 Vendor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상기사항 외에도 주관부서장은 타당한 사유에 의거 평가대상업체를 제한 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협력업체실적평가서(HSNC-ID09-F11~F14)양식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시행 한다. 다만, 평가주관부서 및 해당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항목은 평가주관부서장의 승인 하에 일부 조정, 변경, 제외, 추가가 가능하다(협력업체실적평가서(HSNC-ID09-F11~F14 대신, 구매시스템(IPS) 내 협력업체등록 및 실적평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1) 일반평가: 연간 공급실적에 대한 가격, 납기, 협조도, 부적합품 발생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로서 각 항목별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한다
- (2) 품질관리평가: 연간 공급실적에 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사후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로서 각 항목별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한다
- (3) 공사협력업체 평가

해당 PJT완료 전 VISA5에서 P0별 20백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한 협력업체 대해 해당 PM 은 반드시 실행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1,3사분기 정식공사협력업체 재등록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2011년1월1일부터 시행)

(4) 평가점수 및 등급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점수별 정해진 해당등급을 부여한다

① 평가점수의 예외적용

가. 해당연도의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실행평가서가 없는 경우, 기성검수실적을 근거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

점 수	등 급
75점 이상	일반 등급
65점 이상	경고 등급
65점 미만	금지 등급
미평가 업체	유보 등급

4) 평가주기

연 1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행 시기는 결산 후 90일 내에 시행한다. 다만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협력업체 중 일부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실적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품의 후 시행할 수 있다

5) 협력업체 평가결과 조치

협력업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등급별 관리

- ① 일반등급업체 : 발주비율유지, 전략/전문파트너사 POOL 활용
- ② 경고등급업체 : 거래가능. 단, 부족항목 시정 필요
- ③ 금지등급업체 : 발주량 삭감 및 대체거래선 개발 완료시까지만 거래
- ④ 유보등급업체 : 평가등급 유보업체로 거래활용 시 등록평가 기준으로 시행

(2) 평가결과통지

- ①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평가 결과를 관련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별 평가등급은 IP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식 번호	문서 및 기록명	보존년한	관리책임자
HSNC-ID09-F01(Rev.3)	협력업체등록신청서	영 구	구매팀장 & 해당팀장
HSNC-ID09-F02(Rev.3)	협력업체 추천서		
HSNC-ID09-F03(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1) (Major Commodity Supplier)		
HSNC-ID09-F04(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2) (Technical Commodity Supplier: SI)		
HSNC-ID09-F05(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3) (Technical Commodity Supplier:자동화)		
HSNC-ID09-F06(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4) (General Commodity Supplier)		
HSNC-ID09-F07(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5) (Expendable Commodity Supplier)		
HSNC-ID09-F08(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6) (Outsourcing Supplier: 1군 공사)		
HSNC-ID09-F09(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 (7) (Outsourcing Supplier: 2군 공사)		
HSNC-ID09-F10(Rev.3)	임시거래업체등록평가서(8) (Business Supplier)		
HSNC-ID09-F11(Rev.3)	협력업체실적평가서 (9) (Commodity Supplier:자재/상품업체)		
HSNC-ID09-F12(Rev.3)	협력업체실적평가서 (10) (Outsourcing Supplier:공사업체)		
HSNC-ID09-F13(Rev.1)	협력업체 실적평가서 (11) (Service Supplier:용역업체)		
HSNC-ID09-F14(Rev.1)	협력업체 실적평가서 (12) (Maintenance Supplier:유지보수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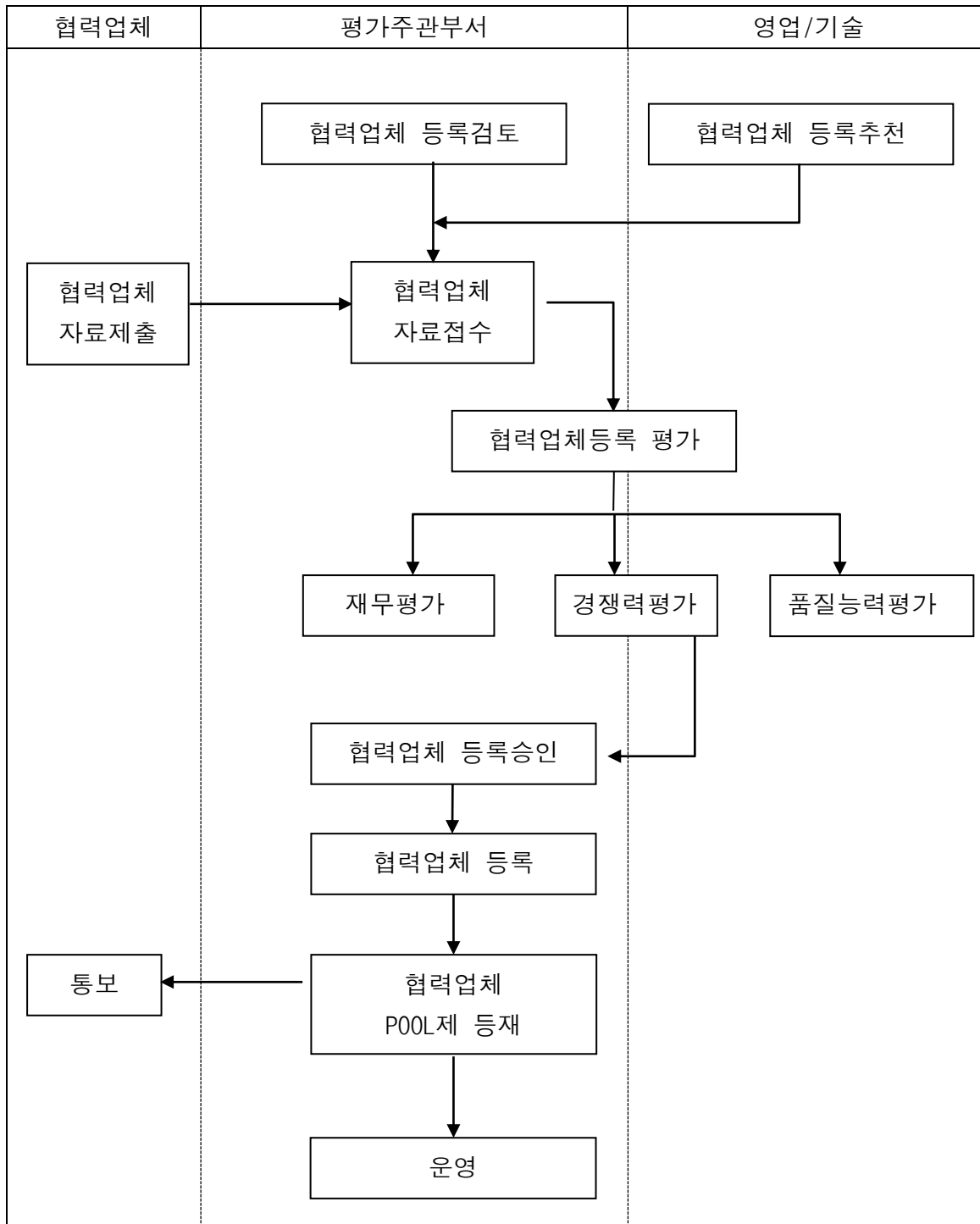
5. 첨부 및 서식

- A. 업무흐름도
- B. 협력업체등록신청서 (HSNC-ID09-F01(Rev.3))
- C. 협력업체 추천서 (HSNC-ID09-F02(Rev.3))
- D. 협력업체등록평가서(1) (HNSC-ID09-F03(Rev.3))(Major Commodity Supp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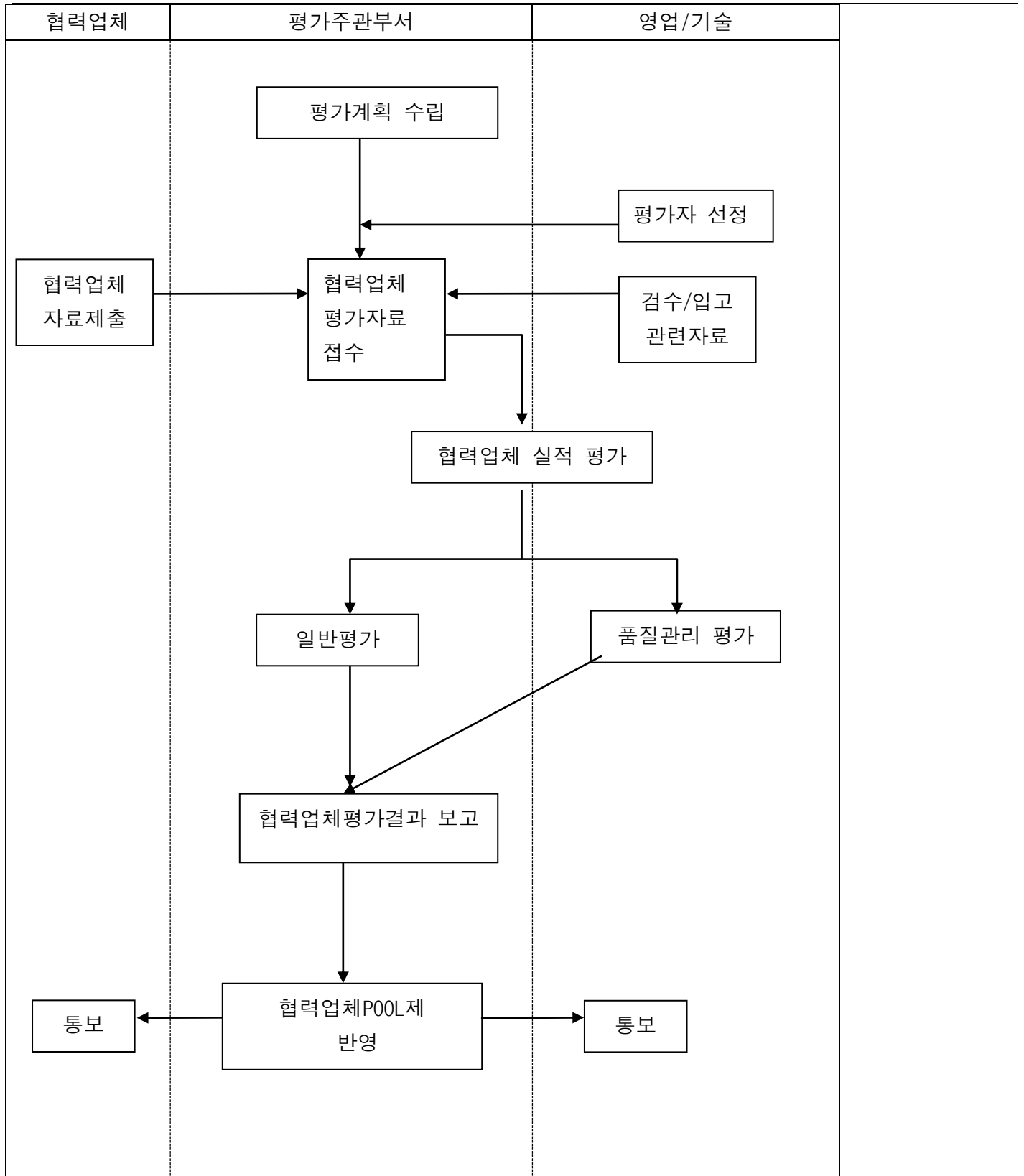
-
- E. 협력업체등록평가서(2) (HNSC-ID09-F04(Rev.3))(Technical Commodity Supplier/SI부문)
 - F. 협력업체등록평가서(3) (HNSC-ID09-F05(Rev.3))(Technical Commodity Supplier/Infra부문)
 - G. 협력업체등록평가서(4) (HNSC-ID09-F06(Rev.3))(General Commodity Supplier)
 - H. 협력업체등록평가서(5) (HNSC-ID09-F07(Rev.3))(Expendable Commodity Supplier)
 - I. 협력업체등록평가서(6) (HNSC-ID09-F08(Rev.3))(Outsourcing Supplier:1군 공사)
 - J. 협력업체등록평가서(7) (HNSC-ID09-F09(Rev.3))(Outsourcing Supplier:2군 공사)
 - K. 임시거래업체 등록평가서(8)(HNSC-ID10-F10(Rev.3))(Business Supplier)
 - L. 협력업체실적평가서(9) (HNSC-ID09-F11(Rev.3))(Commodity Supplier:자재/상품협력업체)
 - M. 협력업체실적평가서(10) (HNSC-ID09-F12(Rev.3))(Outsourcing Supplier:공사협력업체)
 - N. 협력업체실적평가서(11) (HNSC-ID09-F13(Rev.1))(Outsourcing Supplier:용역협력업체)
 - O. 협력업체실적평가서(12) (HNSC-ID09-F14(Rev.1))(Maintenance Supplier:유지보수협력업체)

*) 첨부서류

협력업체 등록평가 FLOW



*) 협력업체 실적평가 FLOW



협력업체등록신청서

1. 필수입력사항

1) 일반사항

회 사 명		회사 설립일	
대표자명		Hompage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태		업 종	
사업자구분	개인 / 법인	기업구분	대기업/중소기업/다국적기업
우편번호		대표FAX	
자산총계		주 소	
부 채		자 본 금	
종업원수		전년도매출액	
은 행 명		예 금 주	
결제계좌		계좌개설지점	

2) 공급가능품목

번 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사업장정보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국 가		도 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FAX	
지급은행		지급은행계좌번호	
예금 주		납품처LOC	
청구처 LOC			

4)영업직원등록

업 체 명		사업장명	
Login ID		비밀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팀 명		직 책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폰		e-mail	

5) 주요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최종학력	주식지분율
사 장					
부사장					
기타임원					

2. 선택입력사항

1) 주요생산품등록(제조업)

주요생산품		CAPA	
시장점유율		동종업체명	

2) 판매품목 등록 (제조업/수입업/판매업)

판매 품목		거래 금액	
시장점유율%		주요거래처명	
경쟁사명			

3) 도급능력현황 (외주공사업)

도급면허명		면허 번호	
공 종 명		직전년도금액	
금년도급			

4) 공사실적 (외주공사업)

거래처명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5) 보유기술자명 (용역업)

사업내용		보유기술수	
특급기술자수		고급기술자수	
중급기술자수			

6) 프로젝트수행실적 (용역업)

프로젝트명		발주처	
개발기간		주요내용	
금 액			

7) 수주실적등록 (용역업)

용역명		계약체결일	
공급처		공급금액	

HSNC-ID09-F01(Rev.3)

협력업체등록 추천서

1. 업체개요

년 월 일

회 사 명		설 립 일	
업 종 명		기업형태 (해당시 0으로 표시)	법인/개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장/비상장
주 소			
사업자등록NO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담당자		e-mail addr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등본/거래통장사본

2. 재무 현황

구 분	자 산	자 본 금	부 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금 년 도					

3. 거래실적

거래처명	품명/공사명/용역명	거래발생일	거래 금액

*) 정부기관/공기업/대기업과의 거래실적 기재

4. 등록추천 사항

추 천 인	소속	(서명)	확인자	성명
	성명	(서명)		(팀장)
등록사유 / 추천사유				
거래분야				

HSNC-ID09-FO2(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1)

(Major Commodity Supplier)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25%)	자본금	5%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적자
	부채비율	5%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이하
경쟁력 평가 (35%)	판매구조	10%	자체제작/총판	공인Reseller	일반대리점	기타
	년간 거래금액	10%	2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장점유율	5%	20%이상	10%이상	5% 이상	5% 미만
	상근인력수	5%	5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미만
	거래업체수	5%	1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10%	10%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상근기술인력수	10%	10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기술제안능력	10%	시스템의통합 운영제안능력	해당품목/Solution 제안능력업체	해당품목 기술보유업체	단순 판매업체
	Partnership계약	5%	5개사 이상	3개사 이상	2개사이상	1개사
	품질관리시스템 (ISO/CMMI)인증	5%	국제품질인증 2개 이상	국제품질인증 1개이상	품질관리 조직보유	없음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HSNC-ID09-F03(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2)

(Technical Commodity Supplier :SI품목군)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25%)	자본금	5%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적자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35%)	판매구조	10%	자체제작/ 총판	공인Reseller	일반대리점	기타
	년간 거래금액	10%	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시장점유율	5%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상근인력수	5%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거래업체수	5%	1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10%	10%	10년 이상	7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상근기술인력수	10%	10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기술제안능력	10%	시스템의통합 운영제안능력	해당품목/Solution 제안능력업체	해당품목 기술보유업체	단순 판매업체
	Partnership계약	5%	5개사 이상	3개사 이상	2개사이상	1개사
	품질관리시스템 (ISO/CMMI)인증	5%	국제품질 2개이상	국제품질 1개이상	품질관리 조직별도	없음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HSNC-ID09-F04(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3)

(Technical Commodity Supplier :자동차 품목군)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25%)	자본금	5%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 적자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35%)	판매구조	10%	자체제작/총판	공인Reseller	일반대리점	기타
	년간 거래금액	10%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Delivery능력	5%	항시 재고보유	수시재고보유	재고 미보유	
	상근인력수	5%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거래업체수	5%	10개사 이상	7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10%	10%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상근기술인력수	10%	10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기술제안능력	10%	자체통합기술 제안능력	해당품목 전문 제안능력업체	해당품목 기술보유업체	단순 판매업체
	A/S능력	5%	전국적 A/S별도보유	A/S조직보유	A/S인원 3명이상	A/S인원 3명 미만
	품질관리시스템 (ISO)인증	5%	ISO인증	품질관리조직 보유	품질관리 유사조직	없음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HSNC-ID09-F05(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4)

(General Commodity Supplier)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25%)	자본금	5%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 적자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35%)	판매구조	10%	자체제작/총판	공인Reseller	일반대리점	기타
	년간 거래금액	10%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Delivery능력	5%	항시 재고보유	수시재고보유	재고 미보유	
	상근인력수	5%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거래업체수	5%	10개사 이상	7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	10%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A/S능력	10%	전국적A/S망 유지	A/S조직운영	A/S인원 3명 미만	A/S인원 3명 미만
	품질인지도/만족도	10%	최상품질	우수 품질	적정품질	미달
	상근 기술인력수	5%	10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미만
	품질관리시스템 (ISO)인증	5%	ISO인증	품질관리조직 보유	품질관리 유사조직	없음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협력업체등록평가서(5)

(Expendable Commodity Supplier)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25%)	자본금	5%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매출액	5%	10억원 이상	5억원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35%)	가격경쟁력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Delivery능력	10%	당일 공급가능	익일내 공급	익일~2일내	3일 이상소요
	전담영업인력	10%	전담인력배치 가능		타사 공유인력 배치	
	거래업체수	5%	10개사 이상	7개사 이상	3개사 이상	3개사 미만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10%	10%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A/S능력	10%	전국적A/S망 유지	A/S조직운영	A/S인원 3명 이상	A/S인원 3명 미만
	기술/설치인력수	10%	3명	2명	1명	없음
	품질인지도/만족도	10%	최상품질	우수품질	적정품질	미달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HSNC-ID09-F07(Rev.3)

협력업체등록평가서(6)

(Outsourcing Supplier:1군 공사)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30%)	자본금	10%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 적자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20%)	가격경쟁력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공사면허기간	5%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거래업체(고객)수	5%	1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상근인력수	5%	5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미만
품질능력 평가 (50%)	2년간 공사실적	10%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기술인력보유	10%	중급 5명이상	중급3명 이상	중급2명 이상	중급1명 또는 초급3명이상
	품질관리시스템 (ISO)인증	10%	ISO인증	품질조직 보유	품질유사조직 보유	없음
	품질/공정관리체계	10%	관리시스템 및 절차/규정보유	절차/규정 보유	일부 보유	없음
	설계 및 견적지원 능력	10%	설계 및 기술 지원능력 보유	기술/견적지원 능력보유	견적spec 지원능력	단순가계 견적지원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협력업체등록평가서(7)

(Outsourcing Supplier:2군 공사)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항 목	평 가 방 법	가중치	평가기준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30%)	자본금	“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경상이익	5%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흑자	전년도 적자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경쟁력 평가 (20%)	가격경쟁력	5%	최우수	우 수	적 정	미 달
	공사면허기간	5%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거래업체(고객)수	5%	10개사 이상	7개사 이상	5개사 이상	5개사 미만
	상근인력수	5%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품질능력 평가 (50%)	2년간 공사실적	10%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술인력보유	10%	초급 5명또는 중급2명이상	초급3명 이상	초급2명 이상	초급2명 미만
	품질관리시스템 (ISO)인증	10%	ISO인증	품질조직 보유	품질유사조직 보유	없음
	품질/공정관리체계	10%	관리시스템 및 절차/규정보유	절차/규정 보유	일부 보유	없음
	설계 및 견적지원 능력	10%	설계 및 기술 지원능력 보유	기술/견적지원 능력보유	견적spec 지원능력	단순가격 견적지원

3.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경쟁력평가					
품질능력평가					
종합평가					

임시거래업체 등록평가서(8)

(Business Supplier)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재무평가 (60%)	자본금	10%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부채비율	10%	13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경상이익	10%	3년 연속흑자	2년 연속흑자	전년도 흑자	전년도 적자
	신용등급	3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품질능력 평가 (40%)	현업종경력:10%	10%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판매구조	5%	자체제작/총판	공인Reseller	일반대리점	기타
	년간거래금액	10%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근 기술인력수	10%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없음
			5명 이상	3명이상	1명이상	
기술제안능력	5%	자체 통합기술 제안	해당품목전문 제안능력	해당품목 기술보유업체	단순판매 업체	
경영실적 현황	직전년도 손익 현황		전전년도 손익현황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경상이익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재무평가					
품질능력 평가					
경영실적 평가					
종합평가					

협력업체실적평가서(9)

(Commodity Supplier:자재/상품업체)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적정(60점)	미달(40점)
일반평가 (40%)	신용등급	5%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 이하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계약 및 납기준수	10%	초기납품/ 계약준수	납기준수/ 계약준수	지체 3% 이내 발생/계약준수	지체를 3% 초과 발생
	원가절감기여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시장정보제공	5%	수시제공	요청시 제공	거래시 제공	없음
	영업담당 협조도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불공정거래건수 (견적거부포함)	5%	없음	1건 발생	2건 발생	2건 초과발생
품질관리 평가 (60%)	부적합품발생	20%	최상품질	부적합 없음	1건 발생	1건 초과발생
	투입기술인력적정성	20%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PJT지원요청 응대	20%	즉시 대응	기한내지원	기한후 대응	미대응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일반 평가					
품질관리평가					
종합평가					

HSNC-ID09-F11(Rev.3)

협력업체실적평가서(10)

(Outsourcing Supplier:공사업체)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항목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 (100점)	우수 (80점)	적정 (60점)	미달 (40점)	
일반평가 (40%)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이하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원가절감기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시장정보제공	5%	수시제공	요청시 제공	거래시 제공	없음	
	영업담당 협조도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불공정거래건수 (견적거부포함)	5%	없음	1건 발생	2건 발생	2건 초과발생	
품질 관리 평가 (60%)	계약준수	납기일 준수	10%	납기단축	납기 준수	지체건수3% 미만	지체건수 3% 초과
		도면/시방서 준수여부	5%	100% 준수	변경 준수	일부 미준수	미준수
	공정관리	공사현장 총괄 관리 (규정/지침/공정진행표)	10%	매뉴얼에 의한 관리	일부 메뉴얼 관리	수작업 관리	관리체계 미흡
		노무관리	5%	상주관리	비상주 관리	요청시 관리	관리 미흡
		자재/투입인력의 적정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기성관리 (적합산출/적기청구)	5%	적정산출 적기청구	적정관리	일부 관리 미흡	비관리
		공정서류 작성 및 보고	5%	주기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교육실행	5%	적발없음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이상
	하자발생	하자발생 빈도	5%	없음	1회발생	하자2회	하자3회
		하자의 경중성 정도	5%	없음	사소함	경미함	중대함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일반평가					
품질관리평가					
종합평가					

HSNC-ID09-F12(Rev.3)

협력업체실적평가서(11)

(Service Supplier: 용역업체)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차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항 목	평가항목	가중 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 (100점)	우수 (80점)	적정 (60점)	미달 (40점)	
일반평가 (40%)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이하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원가절감기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시장정보제공	5%	수시제공	요청시 제공	거래시 제공	없음	
	영업담당 협조도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불공정거래건수 (견적거부포함)	5%	없음	1건 발생	2건 발생	2건 초과발생	
품질 관리 평가 (60%)	계약준수 (20%)	납기일 준수	10%	납기단축	납기 준수	지체건수3% 미만	지체건수 3% 초과
		고객만족도	10%	최상	적정	보통	미흡
	품질평가 (30%)	품질 관리체계 보유	5%	매뉴얼에 의한 상시관리	일부 매뉴얼 관리	수작업 관리	관리체계 미흡
		프로젝트 중 인력변경 (교체)	5%	변경없음, 평가우수	변경없음	투입인력 10% 이내변경	투입인력 10% 이상변경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최우수	우 수	적 정	미 달
		기성관리	5%	적정산출 적기청구	적정관리	일부관리미흡	비관리
		진도율 작성 및 보고	5%	주기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Risk관리 (10%)	Risk 관리체계 보유	5%	매뉴얼에 의한 상시관리	일부 매뉴얼 관리	수작업 관리	관리체계 미흡
		하자발생 빈도	5%	없음	1회 발생	하자 2회	하자 3회이상

3. 평가결과

구 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일반평가					
품질관리평가					
종합평가					

HSNC-ID09-F13(Rev.1)

협력업체실적평가서(12)

(Service Supplier:유지보수업체)

1.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자본금		매출액	
거래분야		등록업종			

2. 평가항목

항목	평가항목	가 중 치	평가점수 배점				
			최우수 (100점)	우수 (80점)	적정 (60점)	미달 (40점)	
일반평가 (40%)	신용등급	10%	A등급 이상	B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CC등급이하	
	부채비율	5%	150%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원가절감기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시장정보제공	5%	수시제공	요청시 제공	거래시 제공	없음	
	영업담당 협조도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불공정거래건수 (견적거부포함)	5%	없음	1건 발생	2건 발생	2건 초과발생	
품질 관리 평가 (60%)	운영 및 예방점검 (15%)	정기적 시스템 점검	5%	계약준수 수시/월간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2건 이상 미준수
		이력관리/품질관리(보고)	5%	준수 수시/월간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2건 이상 미준수
		기술지원/장비지원(보고)	5%	예방보수	요청시 보수	사후보수	미보수
	장애처리 (25%)	장애발생 건수	5%	목표수준유지	기본수준유지	최저수준	불가수준
		장애발생의 경중성	5%	미미함	사소함	경미함	중대함
		장애복구 신속성	10%	즉시시정	목표 내	목표시간초과	1시간이상 지체
		장애분석/이력관리(보고)	5%	계약준수	1건 미준수	2건 미준수	2건 이상 미준수
	계약준수 (20%)	고객만족도	10%	최상	적정	보통	미흡
		전문인력 지원	5%	전문인력	적정인력	적정인력 미흡	비적정 인력
		정보보호	5%	준수 (4점)	미준수 (0점)	-	-

3. 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주관팀	평가자	팀장확인	평가자 의견
일반평가					
품질관리평가					
종합평가					

HSNC-ID09-F14(Rev.1)